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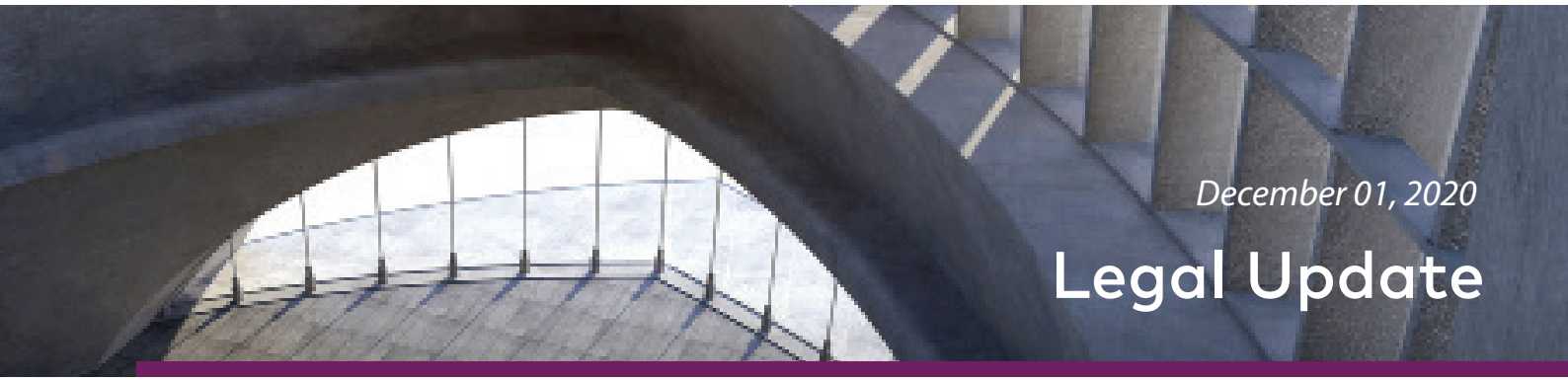

Policy and Law Report _Vol.62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11. 23. ~ 11. 27.) -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개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발간

2020. 11. 20. 개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안내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용 대상, ②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④ 과태료, ⑤ 시행일 등이 설명되어 있음

[참고자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기재부]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 11. 26. 기획재정부는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계획, ②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분과별 점검·보고, ③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④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등이 논의됨

[참고자료]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식약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디지털뉴딜 지원 본격화

2020. 11.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바이오헬스 분야 공공데이터 총 152종을 12월 7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힘

< 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API 개방리스트(152종) >

구분	주요 개방내용
의료기기	• (의료기기 업체·제품)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허가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의료기기 동등제품정보 등 • (의료기기추적관리) 의료기기 품목별 바코드 정보, 의료기기 품목별 유통정보, 의료기기 품목별 포장정보 등 • (의료기기이상·유해사례)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용어정보, 의료기기 유해사례별 제품정보·조치방법·후속조치 정보 등 • (의료기기GMP정보 등) 의료기기 GMP 신청품목 정보, GMP 신청품목별 평가·재평가·회수폐기 정보, GMP 신청품목별 대체교부품목 정보 등

마약·의약품	• (의약품) 희귀의약품 성분정보,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 (마약) 마약류 취급승인 취급품정보, 마약류 생산(수출입)실적보고,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정보, 마약류 취급자현황 정보 등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 위생용품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전문·벤처제조업 인허가정보, 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정보, 먹는 콜라겐 제품 등록현황 등 • (수입식품) 수입식품 수입신고접수업체정보, 해외 제조업정보, 해외작업장정보, 해외제조업소 중단품목 정보 등 • (위생용품) 위생용품 영업신고 정보, 품목제조보고 정보, 위생용품 수입제품 정보 등
기타	• (농약 및 방사선조사식품) 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 방사선조사식품 품목인정 현황 • (농·축·수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 축산물위생 감시결과·운반·판매정보, 수산물업체정보·이력정보 • (유통추적) 바코드연계 제품정보, 유통바코드 정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현황정보 서비스 • (기준 및 행정정보) 국외검사기관 인정현황, 위생공통교육기관내역,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과대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정보, 지도단속 계획 및 실적현황 • 식품영양성분정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정보 등

[참고자료]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디지털뉴딜 지원 본격화

[중기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발표

2020. 11. 26.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수도권 시·도별 육성중인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관련기업에 정부·지자체가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1조 4,000억원 투자, ② 지역의 민간·주요 공공기관 등이 자율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기금' 권역별 조성, ③ 지역의 신산업 창출기지인 규제자유특구도 뉴딜 분야로 확대 지정하고 디지털 친환경 혁신 거점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2020. 11. 24.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의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환경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2020. 11. 24. 전기 ·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 · 전자제품에 자동판매기 등 23종의 제품을 추가하고, 국제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 전기 · 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는 한편, 폐전기 · 전자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회수 · 인계 ·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에 군수품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전기 · 전자제품 등을 추가하는 것임

[금융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2020. 11. 24.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지표 산출 및 사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미리 승인받아야 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두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이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

2020. 11. 20.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 ②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있음

> 입법예고 법안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2020. 11. 23.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경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 · 과실에서 고의 · 중과실로 개선 등이 있음

[국토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국토부는 2020. 11. 25. 부터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한 운영기관 지정,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②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각각의 인증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4조), ③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등이 있음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기부는 2020. 11. 27. 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목적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제15조),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20조)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법사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2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제4항 제6항).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안 제7조)

[과방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산자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0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 · 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 · 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법 통과 이후 2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였음. 이는 사실상의 자율적 규제에서 명문화된 규제로 순환출자 규제 도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신규로 편입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까지도 해소하고자 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등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

[환노위]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의원 등 17인)」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환노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행안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 · 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